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## 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9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·사설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·私設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제1조(條)에 의(依)한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및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명(題名)을 「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(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) 제1조(條)에 의(依)한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조(條) 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(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) 제1조(條)에 의(依)해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철도(鐵道)·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의 명칭(名稱), 그 접속역(接續驛), 취급종별(取扱種別),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은 별표(別表)와 같이 함.

별표(別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, 항로(航路) 명난(名欄) 중(中) 「1」, 「2」, 「3」, 「4」, 「5」, 「5의2」, 「6」, 「7」, 「8」, 「9」, 「10」을 무릇 「2」, 「3」, 「4」, 「5」, 「6」, 「7」, 「8」, 「9」, 「10」, 「11」, 「12」로, 접속역난(接續驛欄) 중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고무산[古茂山])」을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·북선선(北鮮線) 수성(輸城), 고무산(古茂山) 간(間) 경유(經由)」로, 「청진선(淸津線: 청진[淸津]) 투먼선(圖們線: 웅기[雄基])」를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·북선선(北鮮線) 수성(輸城), 청진(淸津) 간(間) 또는 수성(輸城), 웅기(雄基) 간(間) 경유(經由)」로 개정하고, 1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) | 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) | 여객(旅客)·수하물(手荷物)·소하물(小荷物) 및 부수(附隨) 소하물(小荷物) | 1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금강산탐승승차권을 발매함<br>2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경찰관가족(警察官家族) 이주할인(移住割引)을 함<br>3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부산(釜山)에 발착(發著)하는 군인(軍人)·군속(軍屬)의 가족(家族) 종자(從者)에 대(對)한 운임할인(運賃割引)을 함 |

제3조(條) 중(中) 「사설철도(私設鐵道)」를 「철도(鐵道)」로 개정함.

제4조(條) 중(中) 「사설철도(私設鐵道)로서」를 「철도(鐵道)로서」로, 「사설철도(私設鐵道)가」를 「1 철도(鐵道)가」로 개정(改正)함.